

##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

제정	1996. 3. 1	훈령	제 18호
개정	1998. 10. 2	훈령	제 56호
	2001. 8. 31	훈령	제123호
	2005. 10. 5	훈령	제219호
일부개정	2015. 12. 21	훈령	제389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21. 11. 15	훈령	제499호(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종량제 봉투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2. 21>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**제2조(봉투의 판매)**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(이하 “봉투”라 한다)는 봉투 판매인(제3조에 따라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. 다만,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5. 10. 5, 2015. 12. 21>

**제3조(봉투 판매인의 지정)**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1>

1. 삭제 <2015. 12. 21>
2. 삭제 <2015. 12. 21>
3. 삭제 <2015. 12. 21>
4. 삭제 <2015. 12. 21>
5. 삭제 <2015. 12. 21>
6. 삭제 <2015. 12. 21>
7. 삭제 <2015. 12. 21>

②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

2015. 12. 21〉

1.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2.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
3. 삭제 <2015. 12. 21>

③ 시장은 전항의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, 인구수,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1. 15>

④ 시장은 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1>

제4조(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) ①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1>

1.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2. 판매인지정서
3. 삭제 <2015. 12. 21>

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1>

1.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
2. 판매인지정서

제5조(판매인의 영업상 의무) ① 판매인은 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판매인은 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, 필요한 물량은 유선,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 봉투(매수·교환·환매)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급대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5. 12. 21>

③ 판매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, 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,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. <개정 2015. 12. 21, 2021. 11. 15>

제6조(판매인의 지정취소)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, 2015. 12. 21, 2021. 11. 15>

1. 제5조를 위반한 경우

2. 시장이 정한 대금 납부기한까지 봉투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

제7조(봉투의 판매가격 결정) 봉투의 판매가격은 「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 <개정 2015. 12. 21>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8조(청문)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개정 2005. 10. 5, 2015. 12. 21>

제9조(보고 및 관계장부의 확인) ① 시장은 필요시 판매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자료요청 및 서류 열람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1>

## 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10. 2 훈령 제56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

부칙 <2001. 8. 31 훈령 제123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훈령 제219호>

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2. 21 훈령 제389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1. 15 훈령 제499호,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 
규정 일괄개정규정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5. 12. 21>

판매인지정신청서				처리기간 15일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
	위치		전화번호	
	상호			
영업소 위치				
판매인 구분				
<p>「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.</p>				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	
신청인 (인)				
귀하				
구비서류				수수료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</li> <li>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</li> </ol>				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. 12. 21>

제 호

### 판 매 인 지 정 서

성 명		생년월일	
주 소			
상 호			
영업소위치			
판매인구분			

「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용 인 시 장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5. 12. 21>

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			처리기간 7일
성명		생년월일	
상호		영업소위치	
변경하고자 하는 위치			
변경사유			
<p>「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    영업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.</p>			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
소매인 (인)			
귀하			
구비서류			수수료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.</li> <li>판매인 지정서</li> </ol>			없음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5. 12. 21>

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		처리기간 3일
현 소 매 인	성명	
	상호	
	영업소 위치	
승계를 받고 자 하는 자	성명	
	주소	
	승계사유	
<p>「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   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</p>		
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		
신청인 (인)		
귀하		
구비서류		수수료
1.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. 2. 판매인 지정서		없음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5. 12. 21>

## 용인시 종량제 봉투(매수·교환·환매) 청구서

구 分		신 청 수 량		비 고
합 계		매수	금액	
		1 ℥		
음식물 전용봉투		3 ℥		
		5 ℥		
		20 ℥		
일반용 봉투		5 ℥		
		10 ℥		
		20 ℥		
		50 ℓ		
		100 ℥		
불연성 마대		20 kg		
		50 kg		
재사용 봉투		10 ℥		
		20 ℥		
대형폐기물처리비 납부필증		1,000원		
		2,000원		
		3,000원		
		5,000원		
		10,000원		

위와 같이 용인시 종량제 봉투를 (매수·교환·환매) 청구합니다.

월일년

청구인 (인)

## 용인시 종량제 봉투 공급대행자 귀하